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6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1025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653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박종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오관후

피 고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엽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6,8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천안 C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2017. 7.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분양대금납부방법)

① 피고는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소외 회사에 매각하며 소외 회사는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8,351,049,740원	
구분	납부약정일	분양대금 및 납부할 금액
계약보증금	기납부(2012. 1. 16.)	1,013,542,950
1회 중도금	2017. 10. 10.	2,326,847,190
2회 중도금	2018. 1. 10.	2,505,329,800
잔금	2018. 4. 10.	2,505,329,800
합계	8,351,049,740	8,351,049,740
납부장소	D단체(E조합), 납부방법 : 고지 발급	

제3조(지연손해금)

① 소외 회사가 제2조의 매매대금(정산금 포함)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지정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최고율에 해당하는 년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외 회사에게 제2조의 납부약정일 미도래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분양대금 전액을 별도의 독촉 또는 통지 없이 일시에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가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소외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소외 회사가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제13조(계약보증금 귀속 및 위약금 지급)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나. 원고의 대납 경위

1)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 1,013,542,905원 외에 F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1회 중도금 2,326,847,180원, 2회 중도금 2,505,329,80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잔금 납부기한인 2018. 4. 10.까지 잔금 2,505,329,8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몇 차례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거쳐 2018. 10. 18.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상 잔금과 지연손해금(이하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통틀어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2018. 11. 9.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8. 11. 9. 이사회를 열고 이 사건 잔금 납입을 위한 유상증자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 주식 20%(20,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잔금 상당액인 2,726,899,800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잔금대납확인서 제출경위

1) 피고는 2018. 11. 12.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잔금의 납부를 최고하면서 원고가 2018. 11. 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잔금 등을 납부한 근거(상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약정서 등)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소외 회사 명의로 잔금 등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소외 회사 측은 2018. 11. 중순경 원고에 원고가 이 사건 잔금을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와 원고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결렬되었다.

3)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8. 11. 30. 피고에, “소외 회사는 2018. 11. 9.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잔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외 회사는 2018. 11. 30.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의 이사가 원고가 피고에 입금한 대금을 2018. 12. 3. 예정된 이사회를 통하여 유상증자 자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납부한 잔금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잔금대납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8. 12. 12. 소외 회사에, ‘원고 명의로 2018. 11. 30. 제출된 이 사건 확인서와 F은행으로부터 2018. 12. 4. 수령한 채권해당액 지급요청 철회 공문을 검토한 결과 2018. 11. 9. 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정상적인 잔금 입금으로 인정되고, 은행 측이 채권해당액 지급요청도 철회한 만큼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를 철회하고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잔금을 대납하여 주면, 원고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원고가 대납한 잔금을 주식납입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소외 회사 대신 이 사건 잔금을 납부하면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대금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전환되고, 원고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유상증자 절차가 합법적으로 종료될 것’을 잔금 효력발생 조건(정지조건)으로 한 잔금대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유상증자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잔금 대납은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불성립이 확실시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였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잔금 대납의 효력 발생 시기

1) 관련 법리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2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등 참조).

2) 2018. 11. 9. 이 사건 잔금 대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잔금 최종 납부기한으로 통지한 2018. 11. 9. 원고가 잔금 및

자연손해금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잔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고, 이미 대위변제(대납)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이후 원 · 피고의 행위는 잔금 납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대금의 지급을 위해 개설된 피고의 특별회계 계좌에 이 사건 입금액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위 입금일 이후 자연손해금을 가산하거나 청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잔금의 대납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입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5, 6,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는 2018. 11. 12. 소외 회사에 원고의 입금사실을 알리며,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잔금 등을 납부한 근거를 조속히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소외 회사 명의로의 잔금 등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나 다만, 동 공문 수령 후 14일 이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입금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근거를 제출하면 잔금 입금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② 2018. 11. 14. 다시 소외 회사에 ‘F은행으로부터 2018. 11. 13. 대출계약 종료에 따른 대출금 지급요청공문이 접수되어, 위 2018. 11. 12.자 공문과 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③ 2018. 11. 21. 원고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에서는 이 사건 입금액이 이 사건 잔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권리 ·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법적 관계가 없어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잔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입금액의 반환을 위해 2018. 11. 9.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확인증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④ 피고는 2018. 11. 30. 원고로부터 잔금대납확인서를 받고 난 후인 2018. 12. 12.에야 ‘2018. 11. 9. 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정상적인 잔금 입금이라고 인정된다’고 한 사실에다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들의 거둬진 민원 및 소외 회사와의 계속된 소송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그리 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입금액을 이 사건 잔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2018. 11. 9. 당시 원고의 입금행위를 소외 회사를 대신한 유효한 잔금 납부행위로서 인식하면서 이 사건 잔금에 충당할 의사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8. 11. 30. 이 사건 잔금 대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잔금으로서 이 사건 입금액을 납부한 것임을 피고가 확인하여 위 입금액을 이 사건 잔금 등에 충당한 때에 비로소 제3자 변제로서 대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기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수령한 2018. 11. 30. 무렵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확인서 및 잔금 대납행위에 조건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 완료가 이 사건 잔금 대납의 조건이 되었는지 여부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에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절차가 합법적으로 종료될 것’을 원고의 대납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위 종료 이전에는 대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대납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실현되어야 대납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문구는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면 납부한 잔금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원고가 납부한 금액이 이 사건 잔금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문언 자체로 대납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을 설정하려는 의사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잔금 등을 납부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피고의 2018. 11. 12.자 공문에 대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잔금을 원고 명의로 입금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주주인 원고가 납부한 잔금을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 자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여,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이는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된다’는 사정을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는 행정청으로서 소외 회사의 잔금 납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계약해지를 예정한 상태였고, 2018. 11. 9. 이 사건 입금액을 확인하고도 이를 이 사건 잔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위 입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 및 소외 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이 사건 입금액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8. 11. 12.자 공문에서 요청한 것도 ‘원고의 대납 자격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을 뿐, 대납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와 새로운 협의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 되면’이라는 불확실한 편면적인 조건 설정 요청에 동의하였다거나 이에 구속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은 유상증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자금 마련을 위해 고안된 내부적 방안으로, 피고 및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외 회사 등이 사전에 이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 내용, 실현가능성, 절차 등에 관한 정보도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유상증자 절차의 종료(이사회가 2018. 12. 3. 예정되어있다는 것이므로,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와 그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를 기다리며 27억 원이 넘는 잔금의 대납 효력과 계약의 존속 여부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이도록 하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입금 당시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음에도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잔금 상당액을 입금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입금 후 2018. 11. 15. 소외 회사 이사들과의 첫 협상에서 상호간 합의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입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협상을 이어가다 2018. 11.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2만 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은, 원고의 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피고에 대한 대납행위의 효력을 좌우할 조건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소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 완료가 원고의 이 사건 잔금 대납행위의 효력 발생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조건 미성취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목혜원, 판사 이진규